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3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6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1월 28일

권 유 자: 성 명: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 소:경기 과천시 코오롱로11
전화번호:02-3677-3114

작 성 자: 성 명:권태은
부서 및 직위:커뮤니케이션팀/대리
전화번호:02-3677-440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11월 28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12월 13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12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보통주	84,095	0.33	본인	자기주식으로 의결권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코오롱	최대주주	보통주	18,964,708	75.23	최대주주	-
오운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130,205	0.52	재단	-
이웅열	기타	보통주	96,522	0.38	기타	-
박문희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233	0.00	발행회사 임원	-
이인성	계열사임원	보통주	381	0.00	계열사임원	-
김응옥	계열사임원	보통주	492	0.00	계열사임원	-
김영범	계열사임원	보통주	787	0.00	계열사임원	-
류재익	계열사임원	보통주	2,117	0.01	계열사임원	-
김기덕	계열사임원	보통주	489	0.00	계열사임원	-
이재혁	계열사임원	보통주	335	0.00	계열사임원	-
조현철	계열사임원	보통주	1,156	0.00	발행회사 임원	-
강창희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655	0.00	계열사임원	-
김문수	계열사임원	보통주	900	0.00	계열사임원	-
안병덕	계열사임원	보통주	14,186	0.06	계열사임원	-
김종하	계열사임원	보통주	2,251	0.01	계열사임원	-
전태희	계열사임원	보통주	292	0.00	계열사임원	-
서정민	계열사임원	보통주	356	0.00	계열사임원	-
정사환	계열사임원	보통주	4,101	0.02	계열사임원	-
계		-	19,220,166	76.2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형근	보통주	0	직원	직원	-
권태은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우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11월 28일	2022년 12월 01일	2022년 12월 12일	2022년 12월 1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0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2년 12월 03일(토) 09시 ~ 2022년 12월 12일(월)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longlobal.com	홍보센터→공지 및 뉴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 및 팩스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주소 : (13837)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코오롱글로벌 커뮤니케이션팀
- 업무상 연락처 : (TEL) 02-3677-4405 (커뮤니케이션팀 권태은 대리)
(FAX) 02-3677-563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22년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3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2년 12월 03일(토) 09시 ~ 2022년 12월 12일(월)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

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이사회 결의에 의거,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총회장 폐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총회장 장소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의 목적 및 경위

-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이하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라 함.]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회사에 존속 및 유지시킴으로써 각 사업부 의사결정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전략 추진 및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 (2)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각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한다.
-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 (4)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전략 추진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 (5)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에서 적절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나. 분할 계획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가칭)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며(이하 "본건 분할"이라 함),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2. 분할의 방법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회사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건설사업, 상사사업, 스포츠센터운영사업
분할신설회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주) 분할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

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보통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우선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및 신규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이다.

(2) 분할기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조 (7)항 내지 (8)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나머지는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

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3.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작성일	2022년 07월 20일
이사회결의일	2022년 07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2년 07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2022년 09월 27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2년 10월 07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2022년 11월 2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2월 13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2022년 12월 13일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분할기일	2023년 01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분할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분할등기(예정)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가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2023년 01월 31일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대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3 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 영문: KOLON MOBILITY GROUP CORPORATION

목적	<p>정관 제2조 (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중고차 포함) 및 동부품의 판매 및 정비업 2.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3.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 4.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5.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주차장 운영 및 주차 대행업 7. 자동차 관련 전시장, AS센터, 오피스 등 각종 부동산의 투자/개발/임대/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8.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대행업 9. 자동차 중개알선업 10. 자동차 매매알선업 11. 자동차 탁송업 12. 자동차 악세서리 온라인, 오프라인 중개 및 유통업 13. 자동차 및 오디오 관련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4. 자동차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1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도소매업 17. 온라인정보제공업 18.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서비스업 19. 오투오(O2O) 서비스업 20.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21. 위치 기반 서비스업 22.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3. 경영컨설팅업 24. 상품권 판매업 25. 위 각 호와 관련된 대행업 26. 위 각 호와 관련된 알선 및 운영업 27. 위 각 호와 관련된 중개 및 중개알선업 28.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관양동, 대고빌딩) 9층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onmobility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

주) 위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이억주
1주의 금액	500원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	------

주1)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하면서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할 예정임.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3,556,16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보통주 62,777,250주
	우선주 778,910주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주1) 배정주식 수는 분할비율 * 분할회사의 주식 수 * 1주의 금액비율(10)을 통하여 결정되었음.
 주2)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우선주의 경우 존속회사가 [2022년 7월 20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 우선주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 주식수 * 분할비율 * 1주의 금액비율(10) 만큼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분할 당시 발행하는 우선주 주식 수도 증가함.

(4)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① 배정대상: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② 배정비율: 분할회사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1주당 각각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다.

구분	내용
보통주	0.2490129
우선주	0.2490129
배정비율 산정근거 =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약 1,683억원) / (분할전 순자산의 장부가액 (약 6,745억원)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 (약 15억원))	

주1) 배정비율 산정근거: 2022년 0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장부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주2)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함.

(a) 분할비율: 0.2490129

(b) 1주의 금액비율: 5,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5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10

주3)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하면서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할 예정임

주4) 상기 분할비율은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수점 8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③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종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되,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분할신주를 배정한다.

④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보통주식의 재상장 초일의

증가, 우선주식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우선주의 신규상장 초일의 증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⑤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⑥ 신주권의 상장계획

(가) 보통주

-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함.

- 재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우선주

- 분할신설회사 발행하는 우선주는 본건 분할에 따라 최초로 발행되어 신규 상장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재상장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함.

- 분할회사는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 상장에 필요한 주식수 및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임.

- 우선주 신규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31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위 제(4)항 ④에 따라 지급되는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자본금	31,778,080,000원
준비금	136,565,871,778원

주1) 준비금은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주식발행초과금임.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 이전대상과 가액의 확정 후 최종 확정함. 특히, 존속회사가 [2022년 7월 20일 및 2022년 9월 16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 우선주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자본금 및 준비금이 증가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본 분할계획서 제2조 가.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이전 등 포함).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

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포함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첨부3]에 기재하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또는 관련 계약관계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채권, 채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며, 승계대상 계약목록은 [첨부4]과 같다.

⑦ 본건 분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며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재산(그에 따른 담보권,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권리·의무 포함) 등의 목록은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첨부5]에 기재되어 있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임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이규호	840830-1*****	- 코벨대 호텔경영학과 졸 - 코오롱 전략기획실 상무 - 코오롱인더스트리FNC 전무 -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	3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철원	630318-1*****	- 경성대 화학과 졸 - 코오롱글로벌 AMS 사업부장 - 코오롱글로벌 자동차BU장 (전무) - 코오롱글로벌 BMW본부장 (부사장)	3년
사내이사	김도영	750425-1*****	- 삼성증권 IB부문 Corporate Financing 부서장	3년
사외이사	김학훈	720920-1*****	-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3년
감사	정춘식	630322-1*****	- KEB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3년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30억, 감사의 보수한도는 3억으로 함.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6]과 같다. 다만 [첨부6]의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11) 분할을 할 날

- 분할기일은 2023년 01월 01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2)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5.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의 액	감소할 준비금의 액
[31,778,080,000원]	-

주)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주의 금액은 5,000원임.

(2) 자본금 감소의 방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에 따라,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모두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509871]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증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	종류	분할 전(A)	분할 후(B)	A-B
발행주식수	보통주	25,210,438주	18,932,713주	6,277,725주
	우선주	312,803주	234,912주	77,891주
1주의 금액(원)	보통주	5,000원	5,000원	-
	우선주	5,000원	5,000원	-
자본금(원)	보통주	126,052,190,000원	94,663,565,000원	31,388,625,000원
	우선주	1,564,015,000원	1,174,560,000원	389,455,000원

준비금(원)	주식발행 초과금	51,137,308,270원	51,137,308,270원	-
	이익준비금	6,361,683,755원	6,361,683,755원	-

존속회사가 [2022년 7월 20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 우선주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분할 전 및 분할 후 우선주 주식수와 자본금, 준비금도 증가함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p>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내·외의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전 략 ></p> <p>79. 건강제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의 제조 및 유통사업</p> <p>80. 환경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p> <p>81.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정비 사업</p> <p>82.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p> <p>83.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p> <p>84. 종합관광휴양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사업</p> <p>85. 골프장업, 레저스포츠 및 위락시설 등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p> <p>86.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개발 용역, 운영사업, 인력 관리 용역사업</p> <p>87. 요트 및 보트 판매, 대여, 정비사업</p> <p>88.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p> <p>89. 해외산림자원개발</p> <p>90. 평생교육업, 학원업</p> <p>91.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p> <p>92.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p> <p>93. 건강관련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p> <p>94. 건강관련 제품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p> <p>95. 환경 관리 대행업</p> <p>96. 목재 유통업</p> <p>97. 담배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p> <p>98. 식품접객업</p> <p>99. 국제 물류 주선업</p> <p>100. 의약품 도매업</p> <p>101. 건설기계장비 임대업</p> <p>102. 면직물 직조업</p> <p>103.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p> <p>104. 생활용 가구 도매업</p> <p>105. 가구 소매업</p> <p>106. 지게차 및 산업차량(중고 지게차 및 산업차량 포함) 판매업, 정비 및 부품 사업</p> <p>107. 상품권 판매업</p> <p>108. 금융상품 중개업</p> <p>10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p>	<p>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내·외의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전 략 ></p> <p>79. 건강제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의 제조 및 유통사업</p> <p>80. 환경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p> <p>81. 종합관광휴양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사업</p> <p>82. 골프장업, 레저스포츠 및 위락시설 등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p> <p>83.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개발 용역, 운영사업, 인력 관리 용역사업</p> <p>84. 요트 및 보트 판매, 대여, 정비사업</p> <p>8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p> <p>86. 해외산림자원개발</p> <p>87. 평생교육업, 학원업</p> <p>88.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p> <p>89.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p> <p>90. 건강관련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p> <p>91. 건강관련 제품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p> <p>92. 환경 관리 대행업</p> <p>93. 목재 유통업</p> <p>94. 담배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p> <p>95. 식품접객업</p> <p>96. 국제 물류 주선업</p> <p>97. 의약품 도매업</p> <p>98. 건설기계장비 임대업</p> <p>99. 면직물 직조업</p> <p>100.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p> <p>101. 생활용 가구 도매업</p> <p>102. 가구 소매업</p> <p>103. 지게차 및 산업차량(중고 지게차 및 산업차량 포함) 판매업, 정비 및 부품 사업</p> <p>10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p>
---	--

주) 상기 정관 변경안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6.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또한,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재산, 소송, 계약목록 또는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경우 (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i)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비율

③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 총액

④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 사항(승계대상목록 포함)

(2)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분할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식의 증권시장에 재상장 또는 신규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6) 근로계약관계 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에 동의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목록은 [첨부7]과 같으며, 분할기일까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임직원을 제외하여 분할기일에 확정된다(퇴직금 등 임직원과 관련된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도 이전되는 임직원의 확정에 수반하여 같이 확정됨).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 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분할전		분할후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 모빌리티그룹(주)	
	(분할전 회사)	(분할되는 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유 동 자 산	1,079,737,917,085	890,200,971,524	189,536,945,561	
현금및현금성자산	95,604,016,126	11,429,781,445	84,174,234,68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60,430,910,523	410,638,104,509	49,792,806,014	
미청구공사	276,806,749,794	276,806,749,794		
기타금융자산	5,916,188,175	5,872,101,751	44,086,424	
재고자산	127,753,196,348	72,883,907,776	54,869,288,572	
기타유동자산	113,226,856,119	112,570,326,249	656,529,870	
비유동자산	1,365,265,841,251	941,781,347,211	429,475,466,49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1,233,263,683	166,021,627,363	15,211,636,320	
장기기타금융자산	69,958,643,307	65,156,843,307	4,801,800,000	
유형자산	362,183,297,796	215,106,569,657	147,076,728,139	
투자부동산	271,849,070,662	271,849,070,662		
무형자산	74,685,933,201	16,492,850,319	58,193,082,882	
사용권자산	109,118,732,855	17,678,394,902	91,440,337,953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81,520,907,822	71,988,668,384	109,532,239,438	
이연법인세자산	91,583,404,442	97,574,376,895	0	
기타비유동자산	23,132,587,483	19,912,945,722	3,219,641,761	
자 산 총 계	2,445,003,758,336	1,831,982,318,735	619,012,412,054	
부채				
유동부채	1,369,632,905,614	1,095,770,249,877	273,862,655,73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09,329,862,034	476,857,572,795	32,472,289,239	

초과청구공사	231,640,059,729	231,640,059,729	
차입금및사채	352,688,695,563	159,972,583,664	192,716,111,899
기타금융부채	903,782,236	903,782,236	
당기법인세부채	35,822,707,345	35,822,707,345	
기타유동부채	239,247,798,707	190,573,544,108	48,674,254,599
비유동부채	400,878,345,870	230,063,513,783	176,805,804,54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691,464,888	981,148,888	710,316,000
장기차입금및사채	171,371,293,632	91,371,293,632	80,000,000,000
순확정급여부채	50,393,720,744	35,609,352,144	14,784,368,600
기타비유동부채			
장기충당부채	84,969,330,287	10,645,509,040	74,323,821,247
이연법인세부채	69,452,536,319	68,456,210,079	996,326,240
부 채 총 계	1,770,511,251,484	1,325,833,763,660	450,668,460,277
자본			
자본금	127,682,825,000	95,904,745,000	31,778,080,000
자본잉여금	112,280,340,017	(24,285,531,761)	136,565,871,778
이익잉여금	496,722,323,873	496,722,323,87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640,492,649)	(60,640,492,649)	
기타자본	(1,552,489,389)	(1,552,489,389)	
자 본 총 계	674,492,506,852	506,148,555,074	168,343,951,778
부채와자본총계	2,445,003,758,336	1,831,982,318,735	619,012,412,054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1. 승계대상 자산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4,174,234,681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	수입자동차 및 수입오디오 관련 매출채권	23,101,703,124
	단기보증금	지점 임대보증금 등	1,180,502,400
	미수금	판매 지원금 등	25,510,600,490
소 계			49,792,806,014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금융자산	파생상품 자산	차입금 이자율 스왑	44,086,424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선급금/일반	317,935,362
	선급비용	지점 임대료 및 차량 보험 선급비용 등	337,276,326
	매입부가가치세대급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1,318,182
소 계			656,529,870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재고자산	상품	상품	52,762,397,088
	미착재고	미착재고	2,106,891,484
소 계			54,869,288,572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기타유동자산	당기손익인식/비유동성 /채무상품	자동차조합 출자금	1,800,0000
		케이파이브구차 후순위 사채	4,800,000,000
소 계			4,801,800,000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유형자산	토지	전시장 및 AS센터 토지 등	60,368,337,591
	건물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 등	95,648,830,886
	감가상각누계액/건물		(22,782,114,524)
	구축물	AS센터 성능개선공사 및 캐노피 부품창고 등	2,077,798,854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1,154,423,090)
	기계장치	도장부스 및 리프트, 얼라이언트 System외	4,996,750,004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3,000,653,393)
	차량운반구	서비스 모바일 차량 및 긴급출동차량등	597,824,866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184,742,907)
	공구와기구	도장부스 및 샌딩룸, 리프트 공구장비등	10,502,537,228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8,410,353,026)

	비품	노트북 및 데스크탑 등	32,513,761,133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24,214,640,313)
	건설중인유형자산	AS센터 신축공사 등	117,814,830
소 계			147,076,728,13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무형자산	영업권	사업결합	15,215,045,919
	딜러계약	ANC 딜러계약	39,400,000,000
	개발비	KASS 시스템 등	1,129,012,970
	회원권	리조트	1,321,117,440
	소프트웨어	DMS Additional License 등	75,355,167
	라이선스	DMS 및 CPM 라이선스 등	114,705,388
	기타무형자산	MSCRM 및 MS-Dynamic 등	937,845,998
소 계			58,193,082,882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사용권자산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토지	대치AS 주차장 등	354,879,468
	리스/비유동/토지 /차감누계액		(208,743,989)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건물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등	140,059,640,534
	리스/비유동/건물 /차감누계액		(49,125,133,632)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구축물	주차장 임차료 등	146,686,525
	리스/비유동/구축물 /차감누계액		(80,500,945)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기계장치	기계식 주차장 임차료 등	134,804,750
	리스/비유동/기계장치 /차감누계액		(91,316,460)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차량운반구	렌터카 등	534,999,550
	리스/비유동/차량운반구 /차감누계액		(284,977,848)
소 계			91,440,337,953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장기대여금	주택지원금	90,000,000
	보증금	임차보증금전세권	19,683,253,800
		예치보증금	285,432,320
		기타	50,000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4,847,099,800)
소 계			15,211,636,320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종속기업투자주식	코오롱아우토	53,297,239,438
		코오롱오토모티브	53,235,000,000
		코오롱제이모빌리티	3,000,000,000
소 계			109,532,239,438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비용 / 신차교환	스마트케어 패키지보험료등	273,751,761
	장기선급비용 / 무상보증	스마트케어 패키지 보험료등	2,084,490,000
	장기선급금_고정자산	토지매입계약금등	861,400,000
소 계			3,219,641,761

2. 승계대상 부채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수입자동차 및 수입오디오 사업 매입채무 등	23,600,910,742
	미지급금	수입자동차 및 수입오디오 사업 미지급금 등	8,538,151,677
	미지급비용	BSI+Warranty plus 판매원가 정산 등	333,226,820
소 계			32,472,289,23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단기차입금 및 사채	단기차입금	은행권 차입금 및 BMW 재고차입금 등	127,764,799,760
	단기사채	단기사채	65,000,000,000
		할인발행차금	(48,687,861)
소 계			192,716,111,89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신차 판매 계약금 등	25,970,297,617

	예수원천세	근로소득지방소득세	(268,570)
	기타유동부채	임직원 연차수당 등	5,512,698,057
	리스부채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 등	17,191,527,495
소 계			48,674,254,59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차입금 및 사채	사채	사채	80,000,000,000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예수보증금	임대전세보증금	660,316,000
		거래보증금	50,000,000
소 계			710,316,000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	50,681,826,022
		국민연금전환금	(91,701,861)
		퇴직연금운용자산	(35,805,755,561)
소 계			14,784,368,600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총당부채	장기총당부채	판매보증총당금 등	996,326,240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 부채	무상보증 등 장기계약부채	6,957,115,991
		리스부채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 등
소 계			74,323,821,247

(단위 : 원)			
----------	--	--	--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	5,990,972,453

3.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1) 승계대상 토지 목록

소유주	지번	면적(㎡)	지목	비고
코오롱글로벌(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2	1,026.50	대	대구지점
코오롱글로벌(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17,31,32	2,827.00	대	광주지점(미니/AS)
코오롱글로벌(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	1,066.00	대	의정부지점
코오롱글로벌(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764-1외 3필지	3,765.00	잡	순천지점(AS)
코오롱글로벌(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89	4,083.50	대	성산AS
코오롱글로벌(주)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04-2	3,247.00	공장	대구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4 - 1	3,096.00	공장	대전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3 - 2	507.00	대	대전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3 - 4	80.00	도로	대전AS
코오롱글로벌(주)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61-9	6,429.80	공장	광주AS
코오롱글로벌(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8	1,171.00	대	의정부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56-5	1,205.50	대	대전유성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7	792.40	대	
코오롱글로벌(주)	강원도 강릉시 교동 613-1	3,394.00	답	

(2) 승계대상 건물 목록

소유주	지번	면적(㎡)	용도	비고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64-2	1,134.78	전시장	대전지점
코오롱글로벌(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9-24,25	975.97	전시장	부산지점
코오롱글로벌(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2	4,027.71	전시장	대구지점
코오롱글로벌(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17외 2필지	2,932.96	전시장+수리점	광주지점(미니/AS)
코오롱글로벌(주)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792-134	970.16	전시장+수리점	구미지점(AS)
코오롱글로벌(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893	2,193.55	전시장+수리점	김해지점(AS)
코오롱글로벌(주)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96 (송내동 387)	1,785.57	전시장	부천지점
코오롱글로벌(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	2,103.44	전시장	의정부지점
코오롱글로벌(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764-1외 3필지	4,016.94	전시장+정비공장	순천지점(AS)
코오롱글로벌(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89	8,892.23	정비공장	성산AS
코오롱글로벌(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73-1외14필지	4,664.00	정비공장	부산AS
코오롱글로벌(주)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04-2	5,224.81	정비공장	대구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4 - 1	1,989.06	정비공장	대전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3 - 2	197.32	정비공장	대전AS
코오롱글로벌(주)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61-9	7,402.23	정비공장	광주AS
코오롱글로벌(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 97-8	7,386.30	정비공장	부천AS
코오롱글로벌(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8	1,208.05	수리점	의정부AS

코오롱글로벌(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4,4-5,4-9	972.94	수리점	대구수성A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2-2, 3	560.00	수리점	대전AS
코오롱글로벌(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7-5, 47-6	1,342.63	수리점	서초미니아S
코오롱글로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56-5	2,105.32	수리점	대전유성AS

4.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구분	출원번호	내용
상표권 (22.04.22 출원)	4020220075584 4020220075585	유료시승 플랫폼 "바로그차"

[첨부3]

승계대상 소송 목록

(단위: 백만원)

발생일	원고	피고	소송명	소송가액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22.03.21	KGC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BMW 광주AS 차량수리 용역비	17	원고는 피고의 차량 수리 요청 및 지불보증에 따라 차량수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차주의 보험사기 혐의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소송 제기	1심 : 원고일부승 22.02.08 *원금(17백만원)을 전부 수령하였으나, 이자(3백만원) 부분을 다투기 위해 2심 진행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5.07	길종만	KGC외 1명	BMW 중고차량 매매대금반환등	55	원고는 피고KGC의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시 안 내받은 내용과 차량의 상태가 달라 피고KGC 및 직원을 상대로 차량매매대금반환청구.	1심 : 원고패 22.06.16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08.28	강만승외 301명	KGC외 8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	2,425 (830)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사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약/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 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1심 진행중	
18.09.05	조재택외 43명	KGC외 5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	200 (50)		1심 진행중	
18.09.05	이기성외 12명	KGC외 5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3)	60 (10)		1심 진행중	
18.09.10	박선미외 45명	KGC외 6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4)	200 (95)		1심 진행중	
18.09.11	김지성외 4명	KGC외 5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5)	200 (40)		1심 진행중	
18.09.17	박해경외 40명	KGC외 6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6)	185 (70)		1심 진행중	
18.09.27	김종한외 44명	KGC외 7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7)	190 (50)		1심 진행중	

18.09.27	박정현외 39명	KGC외 7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8)	200 (50)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 사 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 약 /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소유 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 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 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1심 진행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만, 위 소송 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09.28	주식회사 우연티엔 이외97명	KGC외 7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9)	450 (125)		1심 진행중		
18.10.04	이권진외 347명	KGC외 8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0)	2,705 (565)		1심 진행중		
18.10.10	권승형외 45명	KGC외 6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1)	195 (65)		1심 진행중		
18.10.17	미래세무 법인외 17명	KGC외 3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2)	70 (15)		1심 진행중		
18.10.19	이동훈외 22명	KGC외 6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3)	125 (15)		1심 진행중		
18.10.25	이용규외 29명	KGC외 8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4)	135 (25)		1심 진행중		
18.11.02	강민경외 120명	KGC외 7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5)	850 (195)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 사 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 약 /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소유 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 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 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1심 진행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만, 위 소송 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11.07	김용범외 37명	KGC외 7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6)	195 (60)		1심 진행중		
18.11.26	송용남외 23명	KGC외 5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7)	140 (25)		1심 진행중		
18.12.04	이정숙외 20명	KGC외 5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8)	105 (30)		1심 진행중		
18.12.11	이석형외 20명	KGC외 6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9)	95 (45)		1심 진행중		
19.01.03	김내희외 7명	KGC외 6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0)	50 (10)		1심 진행중		
19.02.25	강병규외 256명	KGC외 8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1)	2,390 (630)		1심 진행중		
19.03.07	주식회사 연코리아 외11명	KGC외 4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2)	55 (10)	1심 진행중			
19.03.14	김동준외 101명	KGC외 7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3)	815 (145)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 사 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 약 /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소유 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 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 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1심 진행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만, 위 소송 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03.21	김애리외 91명	KGC외 8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4)	900 (180)		1심 진행중		
20.01.14	강서준외 65명	KGC외 6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5)	310 (55)		1심 진행중		
21.08.05	전영배외 7명	KGC외 4명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6)	34 (2)		1심 진행중		
19.07.24	현대해상 화재보험	KGC외 2명	BMW 차량화재 구상금	114 (60)		BMW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원고가 자기차량		1심 진행중

	주식회사		(5)		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KGC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매도하였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22.04.18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KGC외 1명	BMW 차량화재 구상금 (6)	15	BMW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원고가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KGC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매도하였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1심 진행중	
22.03.02	두미선	KGC	BMW 롤스로이스 양수 금	20	피고와 소외 문기주 사이에 체결된 롤스로이스 컬리넨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출고 약정기일 위반)으로 해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문기주의 계약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당사자로서 위 차량 매매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함.	1심 진행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03.24	타이어뱅크 주식회사	KGC	BMW 대전AS 부당이득금	3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접촉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 사고수리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피고가 피고의 대전AS센터에 입고된 이 사건 차량에 불필요한 과잉정비(헤드라이트 교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잉정비에 기인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함.	1심 진행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2.05.20	KGC	용산세무 서장	부가가치세경정 청구 거부처분 취소	1,830	'2014년 1기 ~ '2017년 1기 운용 리스 차량인 시승차의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1심 소장 접수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03.12	KGC	강남세무 서장외11	부가가치세경정 청구 거부처분 취소	7,269	'2014년 1기 ~ '2017년 1기 운용 리스 차량인 시승차의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1심 진행 중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첨부4]

승계대상 계약 목록

1. 승계대상 계약

순번	구분	제목	계약상대방	체결일
1	차량보험	모도라드_업무용_82나5680	삼성화재	2022.04.05
2	차량보험	대구AS_찾서_42도6248	DB손해보험	2022.04.05
3	차량보험	성산AS(부품실)_업무용_86저9793	삼성화재	2022.06.22
4	차량보험	서초미니AS_긴급출동_28구4974	삼성화재	2022.06.22
5	차량보험	광주AS_긴급출동_142버8601	DB손해보험	2021.10.26
6	차량보험	강남역AS_긴급출동_142버8602	DB손해보험	2021.10.26
7	차량보험	교대AS_긴급출동_142버8605	DB손해보험	2021.10.26
8	차량보험	대구AS_긴급출동_142버8606	DB손해보험	2021.10.26
9	차량보험	대전AS_긴급출동_142버8608	DB손해보험	2021.10.26
10	차량보험	부천AS_긴급출동_142버8610	DB손해보험	2021.10.26
11	차량보험	대치AS_긴급출동_142버8679	DB손해보험	2021.11.24
12	차량보험	오포AS_긴급출동_142버8612	DB손해보험	2021.11.24
13	차량보험	성산AS_긴급출동_142버8619	DB손해보험	2021.11.24
14	차량보험	순천AS_긴급출동_142버8616	DB손해보험	2021.11.24
15	차량보험	부산AS_긴급출동_142버8638	DB손해보험	2021.11.24
16	차량보험	성산AS_임원_서울52구8109	삼성화재	2021.12.22
17	차량보험	성산AS_임원_서울52루9065	삼성화재	2021.12.22
18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강남역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19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광주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20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교대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21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대구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22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대전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23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부산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24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부천시점	DB손해보험	2021.12.30
25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성산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26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순천시점	DB손해보험	2021.12.30
27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AS오포지점	DB손해보험	2021.12.30
28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산점	DB손해보험	2022.02.08
29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인천점	DB손해보험	2022.02.08
30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청주점	DB손해보험	2022.02.08
31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서대구점	DB손해보험	2022.02.08
32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부산사상점	DB손해보험	2022.02.08
33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_창원점	DB손해보험	2022.02.08
34	인허가보증보험	BPS서울지점자동차매입자손해배상책임보증	서울보증보험	2020.01.16
35	인허가보증보험	BPS대구지점자동차매입자손해배상책임보증	서울보증보험	2021.02.15
36	인허가보증보험	BPS대전지점자동차매입자손해배상책임보증	서울보증보험	2020.10.15
37	인허가보증보험	BPS부천시점자동차매입자손해배상책임보증	서울보증보험	2020.08.09
38	인허가보증보험	BPS광주지점자동차매입자손해배상책임보증	서울보증보험	2021.12.01
39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강남빌딩전광판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2022.06.10
40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AS성산외10개지점)	현대해상화재보험	2022.02.09
41	생산물배상책임보험	B&O생산물(제품)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2021.12.26
42	그룹MIP보험	종합재산보험	삼성화재	2021.12.01

43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	AS사업장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2022.06.04
44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전국승강기(승객용,차량용)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2021.12.01
45	용역직원	전국용역직원(시설,미화,주차,보안)계약업체	코오롱엘에스아이	2022.01.01
46	세차/광택	AS수도권지점계약업체	애니역삼	
47	세차/광택	대전AS계약업체	기범광택	
48	세차/광택	대구AS계약업체	센스타반야.	
49	세차/광택	부산AS계약업체	알피엠	
50	세차/광택	광주AS계약업체	그루밍세차	
51	세차/광택	광주AS계약업체	SM광택	
52	세차/광택	R.R신차PDI계약업체	루트카	2022.04.01
53	세차/광택	R.R신차PDI계약업체	카플리에	2022.04.01
54	세차/광택	R.R신차PDI계약업체	호성	2022.01.01
55	지정폐기물수거	수도권,충청,대구/경북권 계약업체	강.상사	2021.12.01
56	지정폐기물수거	부산,경남권 계약업체	자원환경	
57	지정폐기물수거	광주AS계약업체	전남클린코리아	
58	지정폐기물수거	순천AS계약업체	신안자원	
59	차량탁송	수도권차량탁송계약업체	다음특수운송	2021.10.31
60	차량탁송	수도권차량탁송계약업체	동부캐리어	2021.10.31
61	인탁송	전국인탁송계약업체	차란차	2021.10.25
62	인탁송	전국인탁송계약업체	도올탁송	2021.10.25
63	승강기관리대행	성산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진영엘리베이터	
64	승강기관리대행	대치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아이원엘리베이터	
65	승강기관리대행	강남역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서울파킹시스템	
66	승강기관리대행	분당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경기엘레베이터	
67	승강기관리대행	교대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아이원엘리베이터	
68	승강기관리대행	대전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건영엔지니어링	
69	승강기관리대행	대구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태영에레베이터	
70	승강기관리대행	부산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삼성엘리베이터	
71	승강기관리대행	광주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삼부테크	
72	승강기관리대행	순천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삼성엘리베이터	
73	승강기관리대행	김해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금보엘리베이터	
74	승강기관리대행	부천AS지점(차량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영준파킹시스템	
75	승강기관리대행	부천AS지점(승객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현대엘리베이터	
76	승강기관리대행	의정부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나라엘리베이터안전관리	
77	승강기관리대행	유성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건영엔지니어링	
78	승강기관리대행	MINI서초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아이원엘리베이터	
79	승강기관리대행	BMW강남지점(차량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진영엘리베이터	
80	승강기관리대행	BMW강남지점(승객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동성엘리베이터	
81	승강기관리대행	BMW삼성지점(차량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오케이엘리베이터	
82	승강기관리대행	BMW삼성지점(승객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현대엘리베이터	
83	승강기관리대행	BMW대전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동부엘리베이터	
84	승강기관리대행	BMW대구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태영에레베이터	
85	승강기관리대행	BMW부산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금융엔지니어링	
86	승강기관리대행	BMW광주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삼부테크	
87	승강기관리대행	BMW의정부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나라엘리베이터안전관리	
88	승강기관리대행	BMW부천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한국엘리베이터보수관리	
89	승강기관리대행	MINI대구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태영에레베이터	
90	전기안전대행	성산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하전기안전관리	
91	전기안전대행	대치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하전기안전관리	
92	전기안전대행	강남역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하전기안전관리	

93	전기안전대행	분당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서광안전컨설팅	
94	전기안전대행	교대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하전기안전관리	
95	전기안전대행	대전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이에스기술단	
96	전기안전대행	대구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명성전기안전관리	
97	전기안전대행	부산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효성기술단	
98	전기안전대행	광주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삼성전기안전관리	
99	전기안전대행	순천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한국전기이앤씨	
100	전기안전대행	오포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산업전기관리공사	
101	전기안전대행	수성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명성전기안전관리	
102	전기안전대행	구미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명성전기안전관리	
103	전기안전대행	김해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코아이앤지전력	
104	전기안전대행	부천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한국전력안전공사	
105	전기안전대행	유성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유.전기안전	
106	전기안전대행	MINI서초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하전기안전관리	
107	전기안전대행	MINI대구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명성전기안전관리	
108	전기안전대행	BMW강남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하전기안전관리	
109	전기안전대행	BMW삼성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하전기안전관리	
110	전기안전대행	BMW대전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이에스기술단	
111	전기안전대행	BMW대구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명성전기안전관리	
112	전기안전대행	BMW부산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한국나이스이테크	
113	전기안전대행	BMW광주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대림전기안전관리	
114	전기안전대행	BMW의정부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신한기술단	
115	전기안전대행	BMW부천시점전기안전대행업체	서광안전컨설팅	
116	소방안전관리대행	성산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17	소방안전관리대행	대치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18	소방안전관리대행	강남역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19	소방안전관리대행	분당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20	소방안전관리대행	교대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21	소방안전관리대행	대전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태정방재	
122	소방안전관리대행	대구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부창방재	
123	소방안전관리대행	광주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금강이엔지	
124	소방안전관리대행	순천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국민안전소방	
125	소방안전관리대행	오포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승진방재기술단	
126	소방안전관리대행	구미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부창방재	
127	소방안전관리대행	김해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미래소방	
128	소방안전관리대행	부천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29	소방안전관리대행	의정부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30	소방안전관리대행	유성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태정방재	
131	소방안전관리대행	MINI서초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32	소방안전관리대행	BMW강남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33	소방안전관리대행	BMW삼성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34	소방안전관리대행	BMW대전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다산소방	
135	소방안전관리대행	BMW대구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나라소방방재	
136	소방안전관리대행	BMW부산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이레텍	
137	소방안전관리대행	BMW광주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천하소방	
138	소방안전관리대행	BMW의정부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39	소방안전관리대행	BMW부천시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프라임방재	
140	소방안전관리대행	MINI대구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부창방재	
141	보건관리위탁용역	성산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정해산업보건연구소	2022.02.01
142	보건관리위탁용역	강남역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정해산업보건연구소	2022.05.01

143	보건관리위탁용역	교대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정해산업보건연구소	2022.05.01
144	보건관리위탁용역	대전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대한산업보건협회	2022.03.01
145	보건관리위탁용역	대구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대한산업보건협회	2022.02.01
146	보건관리위탁용역	부산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대한산업보건협회	2021.12.31
147	보건관리위탁용역	광주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김병원산업보건센터	2022.01.01
148	보건관리위탁용역	부천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정해산업보건연구소	2022.02.01
149	안전관리위탁용역	성산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삼성기술안전	2022.02.01
150	안전관리위탁용역	강남역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삼성기술안전	2022.05.01
151	안전관리위탁용역	교대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삼성기술안전	2022.05.01
152	안전관리위탁용역	대전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	2022.01.01
153	안전관리위탁용역	대구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	2022.01.01
154	안전관리위탁용역	부산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대한산업안전협회	2022.01.01
155	안전관리위탁용역	광주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	2022.01.01
156	안전관리위탁용역	부천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삼성기술안전	2022.02.01
157	시스템개발	시승플랫폼및관리시스템개발	(주)한비로소프트	2021.06.10
158	시스템유지보수	위레스마트쇼룸키오스크유지보수	에스큐아이소프트㈜	2022.01.01
159	임대계약(차량전시)	롯데월드타워전시	롯데물산㈜	2022.06.01
160	전광판광고계약	강남LED전광판광고	㈜베이스커뮤니케이션즈	2022.01.01
161	디지털채널운영대행사	MINI인스타그램채널운영대행사	(주)후크콘텐츠	2021.08.01
162	시스템개발	바로그차업무계약	㈜투루엔트카	2022.04.04
163	시스템개발	바로그차PG사계약	㈜토스페이먼츠	2022.01.07
164	시스템개발	바로그차본인인증서비스	㈜KG모빌리언스	2021.01.20
165	시스템유지보수	바로그차임대서버호스팅계약	㈜한비로소프트	2021.07.12
166	사업신고	바로그차통신판매업등록	과천시	2022.02.25
167	사업신고	바로그차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방송통신위원회	2022.05.13
168	딜러십 계약	뱅앤올롭스 마스터딜러십 계약	Bang & Olufsen Limited (HK) / PLAY A/S	2015.06.01
169	딜러십 계약	BOSE 딜러십 계약서	Bose Korea Corporation	2022.04.01
170	마케팅	PR 대행사	Grape PR & Consulting	2021.12.30
171	마케팅	디지털 대행사	㈜플레이디	2021.12.31
172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현대백 본점) . 특약매입 거래계약	한우쇼핑㈜	2021.08.01
173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현대백 무역센터점)	한우쇼핑㈜	2021.10.31
174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현대백 판교점)	한우쇼핑㈜	2022.06.07
175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신세계백 강남점)	㈜신세계	2022.01.19
176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신세계백 센텀시티점)	㈜신세계	2021.07.26
177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신세계백 강남점)	㈜신세계	2021.07.27
178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갤러리아 EAST)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2021.08.12
179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갤러리아 광고점)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2022.02.15
180	상품 유통 . 백화점	백화점 입점 계약(롯데백 본점)	롯데쇼핑㈜	2019.09.26
181	상품 유통 . 온라인 채널	뱅앤올롭스 온라인 채널 입점 계약	온라인 쇼핑몰 17개 채널	채널별 상이
182	상품 유통 . 온라인 채널	BOSE 온라인 채널 입점 계약	온라인 쇼핑몰 48개 채널	채널별 상이
183	상품 유통 . 면세	뱅앤올롭스 면세 채널 거래 계약	㈜선경DFS	2013.12.31
184	상품 유통 . 3자 유통	뱅앤올롭스 가구점 거래 계약 (프리츠한센/산아래 가구)	㈜산아래가구	2019.02.01
185	상품 유통 . 3자 유통	뱅앤올롭스 가구점 거래 계약 (프리츠한센/부산 레팀스)	주식회사 레팀스	2019.03.01
186	상품 유통 . 3자 유통	뱅앤올롭스 하이마트 납품 계약	롯데하이마트㈜	2018.12.01
187	상품 유통 . 3자 유통	뱅앤올롭스 롯데렌탈 서비스(요미) 거래 계약	롯데렌탈 주식회사	2018.07.09
188	물류 계약	뱅앤올롭스 수입/통관 관세사 거래 계약	에이원관세법인	2018.08.01
189	물류 계약	뱅앤올롭스 해상/항공 물류 계약(포워딩 업체 포함)	코오롱베니트/에이치비로직스㈜	2014.01.01
190	물류 계약	뱅앤올롭스 해상/항공 물류 계약(포워딩 업체 포함)	코오롱베니트/은산해운항공㈜	2018.08.01
191	물류 계약	뱅앤올롭스 택배사(로젠택배)	로젠택배	2017.06.01

192	물류 계약	BOSE 동탄 물류 창고 이용 계약	코오롱 인더스트리	2021.08.01
193	보증보험	뱅크올림스 보증보험 계약(현대홈쇼핑)	SIG서울보증	2022.05.01
194	용역	뱅크올림스 압구정 직영점 매트 사용 계약	코리아렌탈서비스(KRS)	2020.12.16
195	용역	압구정 직영점 향기분사기기 렌탈 계약	KZ Scent	2021.09.06
196	용역	BOSE 홈페이지 제작사 거래 계약	픽셀아트워크	2022.06.15
197	용역	뱅크올림스 온라인 쇼핑물 관리 솔루션 이용 약정(사방넷)	다우기술	2022.03.01
198	용역	BOSE 온라인 쇼핑물 관리 솔루션 이용 약정(사방넷)	다우기술	2022.06.01
199	용역	온라인 상품페이지 이미지 제작 용역 약정	㈜가비아	2021.11.01
200	용역	뱅크올림스 온라인 PG사 이용 계약	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	2022.03.15
201	유지 보수	뱅크올림스 서비스센터 사용 전화 녹취기기 이용 약정	㈜베네콤	2020.02.01
202	유지 보수	뱅크올림스 온라인 C/S 전용 인터넷 전화 사용 약정	㈜LG유플러스	2022.04.01
203	유지 보수	직영점/창고 CCTV	총무팀 진행	
204	차량 렌트 계약	차량 (서비스/설치, 부산 포함)	총무팀 진행	
205	용역 서비스	각인서비스	별도 계약 없음	
206	용역	BOSE 온라인 도메인	별도 계약 없음	
207	용역	뱅크올림스 온라인 도메인	별도 계약 없음	
208	비품 제작/공급	카드록	별도 계약 없음	
209	비품 제작/공급	각종 매장 관련 비품(계약서, 봉투 등)	별도 계약 없음	
210	비품 제작/공급	택배 포장 박스	별도 계약 없음	
211	비품 제작/공급	매장 사은품 . 아이패드	별도 계약 없음	
212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	2021.07.22
213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현대하이카손해사정(주)	2021.08.01
214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2022.02.22
215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KB손해사정(주)	2021.03.01
216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2021.07.01
217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한화손해보험(주)	2021.09.01
218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약사손해보험(주)	2021.01.01
219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롯데손해보험(주)	2022.01.01
220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하나손해보험(주)	2022.04.01
221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2020.12.01
222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MG손해보험(주)	2020.12.01
223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캐롯손해보험(주)	2021.06.17
224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22.01.01
225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2020.08.01
226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2022.01.01
227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2022.03.16
228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전국버스공제조합	2022.02.14
229	보험수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전국렌터카공제조합	2021.11.05
230	프로그램사용	Audatex 시스템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아우다텍스코리아(유)	2021.11.01
231	프로그램사용	Mitchell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엠씨인터비스	2020.06.01
232	용역	CIC 사고차 견인 서비스 계약서	마스타자동차관리(주)	2022.06.02
233	용역	IWS 유지보수 계약 체결 (부천AS)	에피카주식회사	2021.01.01
234	용역	IWS 유지보수 계약 체결 (성산AS)	에피카주식회사	2019.12.01
235	상품판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우성오토파트(주)	2022.04.01
236	상품판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SK네트웍스	2017.12.01
237	용역	ServiceCare+ 온라인 결제 관련 계약(PG 사)	NHN KCP	2022.03.17
238	딜러십	FSK 업무제휴 약정서	비앤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021.06.29
239	딜러십	알페라 업무위탁약정서	알페라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021.05.01
240	용역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 계약서	NHN한국사이버결제(주)	2020.11.02
241	용역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 계약서	NHN한국사이버결제(주)	2020.11.07

242	용역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 계약서	NHN한국사이버결제(주)	2020.11.21
243	용역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사후 환급 용역계약서	관세법인 에이원	2021.11.29
244	용역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주)오토서포트	2019.11.01
245	용역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주)제일사	2018.06.11
246	용역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이선례	2019.04.24
247	용역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한외상사	2019년
248	용역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부경사	2018.06.16
249	용역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대현씨에스	2019년
250	용역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세계사	2020.07.10
251	용역	화물운송계약서	(주)신화로직스	2018.09.01
252	판매	BMW스마트케어 보험 청약서	삼성화재해상보험	2022.07.01
253	판매	비앤오 특약매입거래계약서	현대백화점 판교점	2019.03.14
254	판매	비앤오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주)신세계	2018.04.25
255	딜러계약서	롤스로이스 딜러십 계약서	롤스로이스 본사	2019.06.01
256	데모카 리스약정	BMW/MINI/롤스로이스 데모카 운용리스 약정	비엔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57	데모카 보험계약	BMW/MINI/롤스로이스 데모카 차량보험 계약	비엔더블유인슈런스서비스코리아	
258	용역	디지털캠페인활영계약	상상그이상	2022.05.27
259	용역	디지털연간운영계약	함사우트두들	2022.03.01
260	딜러십	업무협약서	비마이카(주)	2020.04.20
261	딜러십	BMW 딜러십 계약(BMW/MIN/MOTORRAD전지점)	비엔더블유그룹코리아	2021.01.01
262	건축공사	BMW대전 용산동 AS센터 신축공사	(주)오토이앤씨	2022.03.15
263	건축공사	BMW대전 용산동 AS센터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주)상원소방	2022.03.18
264	건축공사	BMW 대전AS센터 도장부스 교체 관련 장비 납품 및 부대공사	(주)에스엠비오토와이드	2022.03.23
265	건축공사	BMW 대전 용산동 AS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목원전기설계(주)	2022.05.11
266	건축공사	BMW 춘천전시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2022.05.16
267	건축공사	BMW 춘천전시장 신축공사 감리용역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2022.05.16
268	건축공사	BMW 대전 용산 AS센터 IT기기 공사	코오롱베니트	2022.05.16
269	건축공사	BMW 대전용산 AS센터 서버기기 납품	㈜삼정디지털정보	2022.05.25
270	건축공사	MINI 강릉전시장 및 AS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2022.06.01
271	건축공사	MINI 강릉전시장 및 AS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2022.06.01
272	건축공사	MINI 강릉전시장 및 AS센터 철거공사	명한산업개발㈜	2022.06.10
273	건축공사	BMW 대전 용산동 AS센터 인테리어공사, 가구 납품	㈜디자인정플러스	2022.06.10
274	건축공사	코오롱글로벌(주) 자동차부문 BMW본부 안전보건 컨설팅	(사)대한산업안전협회충북지역본부	2022.06.23
275	건축공사	BMW 대전 용산 AS센터 AS장비 공급 (연단가)	㈜에스엠비오토	2022.07.01
276	건축공사	BMW 대치 AS센터 기존 리프트 철거 및 신규 리프트 설치의 건	㈜에스엠비오토	2022.07.04
278	부동산매매계약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502-4,500-3,502-2,503	동양아이텍외고광만	2021.12.16

2. 승계대상 토지 임대차계약

소유주	지번	면적(㎡)	지목	비고
(주)사우스케이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7,8,9,10	1,100.90	대	강남지점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14	215.50	대	강남지점
(학)국민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4-6	2,361.20	대	삼성지점
이경업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8-1	836.90	대	분당지점

손원철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0,1050-1~2	1,258.80	대	대구미니지점
대전유통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64-2	1,739.00	대	대전지점
류규수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9-24,25	660.00	대	부산지점
류차환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792-134	1,653.00	대	구미지점(AS)
조석금외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893	1,775.90	대	김해지점(AS)
남성산업(주)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96 (송내동 387)	1,489.90	대	부천지점
최연희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73-1외14필지	3,737.20	대	부산AS
KT&G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18	1.454.10	대	강남역AS
임종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7-10,11	1,155.80	대	교대AS
임재모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6-1	461.10	대	대치AS
홍태선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6-19	644.80	대	역삼AS
박준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9-1	3,011.00	대	오포AS
오준수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 97-8	4,579.60	대	부천AS
주해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4	712.10	대	대구수성AS
유창운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5	682.80	대	대구수성AS
안정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9	238.20	대	대구수성AS
김순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2-2, 3	1,425.00	공장	대전AS
박기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7-5, 47-6	687.50	대	서초미니AS

3. 승계대상 건물 임대차계약

소유주	지번	면적(㎡)	구조	비고
(주)사우스케이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7,8,9,10	3,948.70	전시장	강남지점
(학)국민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4-6	4,765.96	전시장	삼성지점
이경업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8-1	2,778.76	전시장	분당지점
손원철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0,1050-1~2	999.73	전시장	대구미니지점
원대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6-23	252.00	전시장	평택MD지점
유현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3 그린파크아파트 상가동 101호	126.10	전시장	이태원MD지점
(주)더높은꿈을향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9 (서초동 1537-1, 1537-8)	376.68	전시장	서초미니지점
(주)신세계프로퍼티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200(학암동) #1213	322.30	전시장	위례지점
(주)신세계프로퍼티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200(학암동) #B401	367.01	전시장	위례지점
(주)대전신세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6층(도룡동)	472.70	전시장	대전Art&Science
KT&G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18	1,998.09	정비공장	강남역AS
임종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7-10,11	3,174.28	정비공장	교대AS
임재모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6-1	1,563.22	수리점	대치AS
홍태선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6-19	568.16	수리점	역삼AS
박준형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9-1	2,964.60	정비공장	오포AS
태승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8-4 1층	300.00	전시장	B&O압구정
안문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43-1 2층	498.75	창고	B&O창고
청담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102호	376.59	전시장	RR 청담
장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4호	87.19	전시장	RR 청담
윤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5호	112.09	전시장	RR 청담

(주)플랜에이더프로듀서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6호	108.47	전시장	RR 청담
청담피에프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7호	211.69	전시장	RR 청담
(주)하나은행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280.70	전시장	RR 판교
이명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9-1	106.47	전시장	분당출고장
오에스케이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98 (용답동 69-2)	967.40	전시장	모토라드
삼정미디어(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6 204호, 205호, 206호	1,465.08	전시장	서울BPS
(주)하나은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450 113호, 114호	1,307.41	전시장	부천BPS
(주)동재자동차백화점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30 엠월드 1층 9호, 12호	1,402.53	전시장	대구BPS
금아(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 복용자동차매매센터 1층 104, 105, 106호	540.00	전시장	대전BPS
김만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 복용자동차매매센터 345호	59.40	전시장	대전BPS
(주)태풍투자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480-10	818.73	전시장	부산BPS
(주)비피에스글로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유통길 78 엠플러스 광주 113호	120.30	전시장	광주BPS
박경훈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유통길 78 엠플러스 광주 204호	1,210.35	전시장	광주BPS

[첨부5]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

1. 승계제외 자산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1,429,781,445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정기예적금 등	3,400,000,810
	기타포괄손익인식/유동성/채무상품	국공채 등	682,540,040
	파생상품 자산	선물환 계약 등	1,789,560,901
소 계			5,872,101,751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건설, 상사,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매출채권	289,978,284,936
	미수금	분양미수금, 공동원가 등	49,866,122,500
	미수수익	대여금 이자 등	3,783,970,095
	단기대여금	건설 사업 대여금 등	60,212,783,116
	단기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등	6,796,943,862

소 계	410,638,104,509
-----	-----------------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미청구공사	미청구공사	건설 사업 미청구공사	276,806,749,794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고용산재 보험 선납	23,173,480,999
		공무원가 선급 등	29,704,245,290
	소 계		52,877,726,289
	선급비용	공사이행보증보험 등	5,987,423,562
		선급 임차료 등	12,372,124,384
		수수료, 이자 선납 등	2,430,777,569
	소 계		10,790,325,515
	선급공사비	계약원가이행원가 등	37,868,022,645
	유동금융보증자산	금융보증자산	11,035,569,982
	소 계		112,570,326,24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재고자산	제품	제품	451,265,980
	상품	상품	14,577,071,406
	재공품	재공품	20,005,541,020
	원재료	원재료	14,366,123,249
	저장품	저장품	6,255,125
	미착재고	미착재고	9,545,578,057
	가설재	가설재	13,932,072,939
소 계		72,883,907,776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기타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 등	23,908,90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민자SOC 사업 출자금 및 조합 출연금 등	62,968,932,427
	기타포괄손익인식	민자SOC 사업 출자금 등	2,003,237,959

	파생상품 비유동	선물환 계약	160,764,017
소 계			65,156,843,307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토지	서초부지 및 라비에벨 등	190,697,930,118
	투자부동산/건물	서초부지 및 라비에벨 등	81,847,471,325
	투자부동산/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994,366,126)
	투자부동산/구축물	라비에벨 유수인입시설 등	13,191,389,942
	투자부동산/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2,893,354,597)
소 계			271,849,070,662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유형자산	토지	라비에벨 골프장 외	184,867,606,162
	건물	스포렉스 건물등	25,327,900,831
	감가상각누계액/건물		(9,328,345,126)
	구축물	생태터널 및 오수처리시설등	2,474,463,735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1,271,717,113)
	기계장치	볼링장 레인등	5,767,134,000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1,945,906,748)
	건설용장비	골프카트 및 트랙터등	2,111,713,380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용장비		(1,780,778,243)
	차량운반구	지게차등	7,102,030,000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5,320,444,927)
	공구와기구	살수기 및 세륜기등	2,390,864,340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1,792,898,599)
	비품	노트북 및 데스크탑등	16,197,007,548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11,393,629,896)
	건설중인유형자산	기타	1,701,570,313
소 계			215,106,569,657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무형자산	영업권	사업결합	1,081,272,299
	개발비	코오롱 PI/ERP프로젝트	4,150,470,453

	회원권	리조트 및 골프장등	10,195,214,632
	소프트웨어	무역 인사시스템 구축등	312,927,753
	기타무형자산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등	752,965,182
소 계			16,492,850,31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사용권자산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토지	현장 가설사무실 토지 등	1,360,470,678
	리스/비유동/토지 /차감누계액		(434,959,510)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건물	현장 숙소등	21,152,940,852
	리스/비유동/건물 /차감누계액		(8,018,160,716)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구축물	현장 컨테이너등	7,175,118
	리스/비유동/구축물 /차감누계액		(4,582,262)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기계장치	무인경비시스템 및 일체형배전반등	71,034,622
	리스/비유동/기계장치 /차감누계액		(17,882,437)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건설용장비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등	2,332,420,162
	리스/비유동/건설용장비 /차감누계액		(829,110,871)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차량운반구	렌터카등	3,538,611,932
	리스/비유동/차량운반구 /차감누계액		(2,013,137,961)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공구와기구	열풍기등	503,803,706
	리스/비유동/공구와기구/차감누계액		(146,816,803)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비품	안면인식기등	272,406,737
	리스/비유동/비품 /차감누계액		(95,818,345)
소 계			17,678,394,902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장기대여금	주택사업 대여금 등	129,982,732,410
	보증금	임차보증금전세권	19,989,272,879
		예치보증금	3,891,563,772
		입찰보증금	5,000,000,000
		환평가 조정 등	(46,126,949)
		유동성대체	(8,078,131,798)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629,639,057)
	장기미수금	장기미수금	206,382,212
	금융보증자산	금융보증자산	15,705,573,894
소 계			166,021,627,363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종속기업투자주식	네이처브리지(주)	-
		(주)테크비전	600,000,000
		코오롱모듈러스(주)	2,086,381,471
		코오롱하우스비전(주)	13,400,000,000
		리베토(주)	1,225
		태백하사미풍력	1,840,000,000
		소 계	17,926,382,696
	관계기업투자주식	김해맑은물길(주)	137,447,589
		서서울고속도로(주)	10,779,820,000
		(주)한우즈벡씨엔지투자	244,036,130
		(주)한우즈벡실린더투자	707,902,647
		Kolon World Investment Ltd.	1,626,829,000
		미래환경에너지(주)	1,240,000,000
		양양맑은물길(주)	402,305,000
		양양풍력발전(주)	10,665,600,000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436,940,000
		춘천맑은물길(주)	259,519,282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7,394,000,000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2,180,500,000
		경주풍력발전(주)	3,420,000,000
		제이영주에스엠씨(주)	87,250,000
		푸른서부환경(주)	74,935,000
		올레팜	4,999,991,040
		영덕해맞이풍력주식회사	6,180,000,000
		탐라사랑	55,210,000
		태백한백풍력	120,000,000
		삼척오두풍력발전(주)	50,000,000
		소 계	54,062,285,688
		소 계	71,988,668,384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이연법인세자산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97,574,376,895

2. 승계제외 부채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건설,상사,스포츠센터 운영 사업 관련 매입채무	379,603,325,281
	미지급금	건설,상사,스포츠센터 운영 사업 관련 미지급금	56,265,778,353
	미지급비용	미지급이자 및 사후관리비 등	29,952,899,179
	유동성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	11,035,569,982
소 계			476,857,572,795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차입금 및 사채	단기차입금	은행권 차입금 및 네고, 유산스 차입금 등	159,972,583,664
소 계			159,972,583,664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건설 초과청구공사	231,640,059,729
소 계			231,640,059,72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공사 선수금 등	85,176,329,013
	예수원천세	근로소득지방소득세	329,398,879
	예수금	건설 예수금 및 예수보증금 등	62,555,771,604
	선수수익	선수수익	5,861,580,371
	공사손실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13,038,175,960
	기타유동부채	임직원 연차수당 등	7,297,684,953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9,920,596,360
	리스부채	리스부채	6,394,006,968
소 계			190,573,544,108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당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법인세 및 주민세 등	35,822,707,345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통화선도 계약 부채	903,782,236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차입금 및 사채	장기차입금	은행권 차입금 등	91,371,293,632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예수보증금	임대전세보증금	5,766,260,000
		회원권 예수보증금 등	2,509,314,994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부채	15,705,573,894
소 계			23,981,148,888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	122,071,292,928
	국민연금전환금	국민연금전환금	(220,871,379)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86,241,069,405)
소 계			35,609,352,144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 등	68,456,210,079

(단위 : 원)

계정과목	구분	내용	금액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 부채	장기종업원급여 등	628,533,034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수익	65,142,549
	리스부채	건물 등	9,951,833,457
소 계			10,645,509,040

[첨부 6]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LON MOBILITY GROUP CORPORATION.(약호 K.M.G)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내·외의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 (중고차 포함) 및 동부품의 판매 및 정비업
2.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3.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
4.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5.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주차장 운영 및 주차 대행업
7. 자동차 관련 전시장, AS센터, 오피스 등 각종 부동산의 투자/개발/임대/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업
8.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대행업
9. 자동차 중개알선업
10. 자동차 매매알선업
11. 자동차 탁송업
12. 자동차 약세서리 온라인, 오프라인 중개 및 유통업
13. 자동차 및 오디오 관련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4. 자동차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1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도소매업
17. 온라인정보제공업
18.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서비스업
19. 오투오(O2O) 서비스업
20.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21. 위치 기반 서비스업
22.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3. 경영컨설팅업
24. 상품권 판매업
25. 위 각 호와 관련된 대행업
26. 위 각 호와 관련된 알선 및 운영업
27. 위 각 호와 관련된 중개 및 중개알선업
28.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경기도 안양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국내 또는 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lonmobility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

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기간은 제1항에 의한 부여 결의시에 정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 중 1,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1,000억원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 중 1,0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1,000억 원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고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로써 소집한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 결의로써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2조 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를 총회 개시 전에 서면 제출하

여야 한다.

제24조(의결방법) 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 요령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이 회사에 보존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26조(이사)

- ① 이 회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은 제외한다.
-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및 보선)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의 임기는 그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 정원에 결치 않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③ 사외이사가 해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설토록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9조(임원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0조(이사회 구성 및 역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31조(대표이사등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위하여 이 회사의 일상 업무를 분담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 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사장, 전무, 상무가 각 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행 순위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3조(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소집에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35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의 책임) 이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는 이 회사가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한다. 단, 그러한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배상 또는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사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이 회사의 비용으로 가입한다.

제37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 회사에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제39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3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 산

제45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46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제1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8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제46조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포함함)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일정한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9조(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되, 배당률은 위 2항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0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부 칙

제51조(세칙, 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51조의2(부칙) 이 정관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7]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범위] 지급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이었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계산방법] ①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당시 보수월액에 별지에 의한 최종직위에 대한 직급별 지급율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간계산에 있어서 1개년 미만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제 4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 5조 [퇴직금의 승계] ① 본 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해당 계열회사에서 퇴직하고 본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임원의 선택에 따라 전적시점에 정산 또는 전적회사로 승계할 수 있다.

② 상기 퇴직금의 승계를 선택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본 회사가 승계하고, 당해 임원이 본 회사에서의 퇴직시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 책임기간은 당해 임원이 이전 계열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6조 [효력] 본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회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구 분	회장 / 부회장 / 사장	부사장 / 전무	상무/상무보/감사
지급지수 (재직1년에 대하여)	4	3	2

다.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재 무 상 태 표>

제 63 기 2022. 09. 30 현재

제 62 기 2021. 12. 31 현재

제 61 기 202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3 기 3분기	제 62 기	제 61 기
	2022.09.30	2021.12.31	2020.12.31
자산			
유동자산	1,170,043,805,982	1,053,725,295,632	1,033,227,276,477
현금및현금성자산	131,762,365,244	97,492,885,991	82,832,003,967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55,245,356,923	513,694,429,676	360,056,505,897
미청구공사	300,239,804,539	243,206,162,622	351,466,590,884
기타금융자산	26,485,486,784	5,129,844,002	15,467,125,071
재고자산	155,865,558,561	109,640,808,811	153,484,822,140
기타유동자산	100,445,233,931	80,126,248,230	69,920,228,51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434,916,300	-
비유동자산	1,423,486,248,337	1,334,787,385,174	1,256,251,600,704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0,474,611,466	155,554,876,849	111,286,915,049
장기기타금융자산	66,789,328,478	83,315,578,924	73,381,349,105
유형자산	374,466,870,523	358,212,494,243	365,101,026,807
투자부동산	281,795,535,118	266,912,982,744	257,264,891,441
무형자산	73,448,217,900	74,787,335,744	77,443,410,754
사용권자산	117,969,853,488	92,979,517,787	93,962,013,849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205,463,210,081	195,928,667,159	194,391,946,583
이연법인세자산	98,170,367,110	85,286,653,998	83,420,047,116

기타비유동자산	34,908,254,173	21,809,277,726	
자산총계	2,593,530,054,319	2,388,512,680,806	2,289,478,877,181
부채			
유동부채	1,439,078,091,443	1,295,063,050,004	1,438,980,370,24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497,442,196,807	527,670,431,909	645,264,668,096
초과청구공사	282,986,554,325	224,509,330,173	149,858,730,400
차입금 및 사채	418,411,743,660	306,891,831,750	437,572,369,206
기타금융부채	43,796,760,338	33,834,655,210	34,013,577,916
당기법인세부채	20,810,824,484	36,641,719,413	35,149,608,091
기타유동부채	153,048,538,215	140,453,571,807	132,448,198,121
총당부채	22,581,473,614	25,061,509,742	4,673,218,418
비유동부채	386,042,924,164	422,799,236,356	306,999,889,215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766,447,350	15,434,900,177	14,448,905,746
장기차입금및사채	156,311,672,182	206,371,293,632	83,357,945,418
순확정급여부채	37,425,327,349	45,586,435,374	56,139,332,772
장기기타금융부채	97,622,637,763	82,077,462,321	86,002,911,134
기타비유동부채	11,753,245,084	6,434,124,701	4,442,799,110
장기총당부채	74,163,594,436	66,895,020,151	62,607,995,035
부채총계	1,825,121,015,607	1,717,862,286,360	1,745,980,259,463
자본			
자본금	127,682,825,000	127,682,825,000	127,682,825,000
자본잉여금	112,265,002,047	130,516,457,659	130,516,457,659
이익잉여금(결손금)	548,606,887,385	423,303,434,470	297,136,200,47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593,186,331)	(9,299,833,294)	(10,284,376,025)
기타자본	(1,552,489,389)	(1,552,489,389)	(1,552,489,389)
자본총계	768,409,038,712	670,650,394,446	543,498,617,718
자본과부채총계	2,593,530,054,319	2,388,512,680,806	2,289,478,877,181

<포괄손익계산서>

제 63 기 2022. 09. 30 현재

제 62 기 2021. 12. 31 현재

제 61 기 202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3 기 3분기	제 62 기	제 61 기
	2022.09.30	2021.12.31	2020.12.31
매출액	3,219,866,540,191	4,228,724,135,333	3,802,884,624,868
매출원가	2,847,560,809,765	3,760,671,436,865	3,402,182,041,797
매출총이익	372,305,730,426	468,052,698,468	400,702,583,071

판매비와관리비	183,332,900,650	229,605,324,061	218,718,619,806
영업이익(손실)	188,972,829,776	238,447,374,407	181,983,963,265
금융수익	10,617,657,935	8,782,014,460	5,746,964,061
금융비용	17,793,327,392	18,842,572,568	25,830,444,637
기타영업외수익	42,414,462,635	37,829,328,593	40,661,876,657
기타영업외비용	51,212,628,870	72,819,086,964	80,339,303,5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72,998,994,084	193,397,057,928	122,223,055,838
법인세비용	40,057,309,757	57,108,028,650	34,129,267,149
당기순이익(손실)	132,941,684,327	136,289,029,278	88,093,788,689
기타포괄손익	(9,285,853,199)	1,051,921,100	(11,373,247,66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9,293,353,037)	835,256,581	(3,942,792,5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16,873,978)	(16,203,107)	3,808,112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9,276,479,059)	851,459,688	(3,946,600,66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7,499,838	216,664,519	(7,430,455,10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948,751,845	(32,532,90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7,499,838	(732,087,326)	(7,397,922,207)
총포괄손익	123,655,831,128	137,340,950,378	76,720,541,02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5,226	5,358	3,464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5,264	5,408	3,464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